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3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13516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장

3.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6224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와 피고 [redacted]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redacted]시장이, 원고와 피고 [redacted]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redacted]시장이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80,179,800원의 부과처분 중 1,605,8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피고 [redacted]시장이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9,641,080원의 부과처분 중 193,0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피고 [redacted]시장이 2018.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904,524원의 부과처분 중 18,1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0 제1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법인세 가산세의 10/100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3

그런데도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하여 법인세 가산세의 10/100이라는 한도액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개정 지방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 중이던 쟁점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쟁점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5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지방세법 제86조 제2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한도액을 법인세 가산세 한도액의 10/100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쟁점 지방세법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도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3

판사 양성욱